



KC 60745-2-16

(개정 : 2022-02-16)

IEC Ed 2.0 2008-02

전기용품안전기준

Technical Regulations for Electrical and Telecommunication Products and Components

휴대형 전동공구 - 안전성 -

제2-16부: 전기 태커의 개별 요구사항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Part 2-8: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ackers

KATS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목 차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1
서문	2
1 적용범위 (Scope)	3
2 인용 표준 (Normative references)	3
3 용어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3
4 일반 요구 사항 (General requirement)	4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General conditions for the tests)	4
6 공란 (Void)	4
7 분류 (Classification)	5
8 표시 및 사용 설명서 (Marking and instructions)	5
9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Protection against access to live parts)	6
10 기동 (Starting)	6
11 입력 및 전류 (Input and current)	6
12 온도 상승 (Heating)	6
13 누설 전류 (Leakage current)	7
14 내습성 (Moisture resistance)	7
15 절연 내력 (Electric strength)	7
16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Overload protection of transformers and associated circuits)	7
17 내구성 (Endurance)	7
18 이상 운전 (Abnormal operation)	8
19 기계적 위험 (Mechanical hazards)	8
20 기계적 강도 (Mechanical strength)	10
21 구조 (Construction)	10
22 내부 배선 (Internal wiring)	10
23 부품 (Components)	10
24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Supply connection and external flexible cords)	10
25 외부 전선용 단자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10
26 접지 접속 (Provision for earthing)	10
27 나사 및 접속 (Screws and connections)	10
28 연면 거리, 공간 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절연거리 (Creepage distances, clearances and distances through insulation)	10
29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Resistance to heat, fire and tracking)	10
30 내부식성 (Resistance to rusting)	11
31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Radiation, toxicity and similar hazards)	11
부속서 (Annex)	12
부속서K (Annex K)	13
부속서L (Annex L)	14
참고문헌 (Bibliography)	15
해 설 1	16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0-54호(2000.04.06)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10호(2007.11.28)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0421호(2014. 9. 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6호 (2022.02.16)

부 칙(고시 제2022-0016호, 2022.02.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5.9.23.)은 6개월 후(2022.08.15.)까지 병행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6부: 태커의 개별 요구사항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Part 2-1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ackers

이 안전기준은 2008년 2월 제2.0판으로 발행된 IEC 60745-2-16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 Part 2-1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acker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0745-2-16(2017.12)을 인용 채택한다.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16부: 태커의 개별 요구사항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Part 2-1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ackers

1 적용범위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추가:

이 안전기준은 범용으로 설계된 태커(tacker)에 적용한다. 이 안전기준은 산업용 생산 용도의 태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용표준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3 용어와 정의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3.101

태커(tacker)

금속 핀, 네일 또는 스테이플 등, 후자를 목재, 플라스틱,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삽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 파스너(fastener)에 에너지가 인가되는 공구.

3.102

작동 시스템(actuation system)

공구 작동 시, 개별적으로 또는 일부를 조합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트리거, 작업물 접촉장치 및/또는 기타 작동 제어기기를 사용하는 것.

3.103

일괄 순차 작동(single sequential actuation)

공구 작동 시 두 개 이상의 작동 제어기기가 특정 순서로 작동하는 시스템. 작업물 접촉장치 이외 특정 작동 제어기기를 해제 또는 재 작동할 경우 추가 작동이 가능.

3.104

전체 순차 작동(full sequential actuation)

공구 작동 시 두 개 이상의 작동 제어기기가 특정 순서로 작동하는 시스템. 전체 작동 제어기기가

동일한 순서로 해제되어 재 작동되는 경우, 추가 작동이 가능.

3.105

접촉식 작동(contact actuation)

공구 작동 시 두 개 이상의 작동 제어기기가 특정 순서로 작동하는 시스템. 특정 작동 제어기기가 해제되거나 재 작동되는 경우, 추가 작동이 가능.

3.106

선택적 작동(selective actuation)

다음의 작동 시스템을 두 가지 이상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작동 시스템: 일괄 순차 작동, 전체 순차 작동 또는 접촉식 작동. 한 가지 이상 선택할 경우, 일괄 순차 작동 또는 전체 순차 작동.

3.107

자동 복귀 작동(automatic reversion actuation)

공구 작동 시 임의의 순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작동 제어기기가 장착된 작동 시스템. 초기 순서에 관계없이, 작동 시스템은 일괄 순차 작동, 전체 순차 작동으로 자동 복귀하거나 중립이 되거나 꺼지도록 설계됨.

3.108

작동(actuate)

파스너 구동을 위한 공구 부품의 작동 유도.

3.109

작동 제어기기(operating control)

개별적으로, 또는 작동 시스템의 일부로 공구 작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어기기.

3.110

작업물 접촉장치(workpiece contact)

고정할 자재에 의해 작동되도록 설계된 공구의 작동 제어기기 소자 또는 어셈블리.

4 일반 요구사항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5.101 파스너를 사용하지 않고 공구를 작동하여 수행하는 시험의 경우 공구가 비정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험 고정구를 제공하거나 다른 작동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6 공란

7 분류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8 표시 및 사용설명서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8.1 추가:

- 선택적 작동 또는 자동 복귀 작동 기능이 있는 공구의 경우: 작동 시스템이 불시에 작동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마킹

8.12.1 추가:

태커(tacker)에 대한 구체적인 공구 안전 경고는 **8.12.1.101**에 수록되어 있다. 이 경고에서 태커라는 용어는 스테이플러(stapler), 네일러(nailer), 등의 구체적인 공구 명칭으로 대체할 수 있다.

8.12.1.101 태커에 대한 안전 지침

태커의 안전 경고

- 공구에는 항상 파스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십시오. 태커의 부주의한 취급 시 불시에 파스너가 발사되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나 인접한 다른 누군가에게 공구를 향하지 마십시오. 잘못 작동할 경우 파스너가 배출되면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작업물에 공구를 확실히 고정된 상태가 아니면 공구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공구가 작업물과 접촉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파스너가 목표물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파스너가 공구에 걸린 경우 공구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걸린 파스너를 제거하는 동안, 전기 플러그가 삽입되어 있으면 태커가 잘못 작동될 수 있습니다.

- 걸린 파스너를 제거할 경우에는 주의하십시오. 이 장치는 압축 상태일 수 있으며 걸린 상태를 해결하는 동안 파스너가 강제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비고 이 경고는 파스너 구동 시 저장 잠재 에너지(stored potential energy)를 사용하지 않는 태커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전기 케이블을 고정할 경우, 케이블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태커는 절연된 그리핑 표면만 잡아야 합니다. 전기 케이블 설치 전용의 파스너만 사용하십시오. 파스너로 인하여 전기 케이블의 절연부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사하십시오. 파스너로 인해 전기 케이블 절연부가 손상된 경우 감전 및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고 이 경고는 전기 케이블 고정에 적합한 태커에 해당된다.

- 이러한 태커는 전기 케이블 고정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전기 케이블 설치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전기 케이블 절연부를 손상시킴으로써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고 이 경고는 전기 케이블 고정에 적합하지 않은 태커에 관한 것이다.

8.12.2 b) 추가:

- 101) 권장 파스너의 유형 및 치수, 또는 제조업체의 참고 번호
- 102) 공구의 작동 및 작동 제어기기에 관한 정보
- 103) 사용자 또는 인접한 다른 사람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104) 전기 케이블 고정 시 태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정보
- 105) 해당 시, 전기 케이블 고정 용도로 사용되는 파스너의 정보

9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0 기동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1 입력 및 전류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대체:

정격 전류는 측정된 전류의 $\pm 20\%$ 이내에 속해야 한다. 정격 입력은 정격 전류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정격 전압 범위가 한 가지 이상 표시된 공구의 경우, 시험은 마킹 또는 정격 전원 입력이 해당 전압 범위의 평균값과 관련되어 해당 범위의 평균값과 동일한 전압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한, 상한 범위와 하한 범위 모두에서 실시해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공구는 파스너가 없는 상태에서 매 1초마다 1회 작동 비율 또는 공구 설계에 따라 제한되는 바에 따라 작동한다. 측정된 전류는 10초 이상에 대한 실효값(rms) 값이다.

12 온도상승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2.2 수정:

공구는 파스너가 없는 조건에서 10사이클, 또는 온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먼저 발생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각 사이클은 매 1초마다 1회 작동하는 비율 또는 공구 설계에 따른 제한 조건에서 1분간 공구를 작동한 후 공구의 전원을 끄고 3분간의 휴지 시간을 갖는다. 온도 상승은 “on” 시간 종료 시 측정한다. 제조업체의 선택에 따라, 공구는 열적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다.

13 누설전류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4 내습성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5 절연내력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6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7 내구성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7.2 대체:

공구는 12.2에 규정된 바와 같은 사이클 비율로 파스너 없이, 정격 전압의 1.1배와 동일한 전압에서 10 000회 작동한 다음 정격 전압의 0.9배와 동일한 전압에서 추가로 10 000회 작동한다.

공구는 공구에 내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이 시험에서, 해당 시, 탄소 브러시를 교체할 수 있으며, 공구는 정상 사용 시와 동일하게 오일 및 그리스를 공급될 수 있다.

공구 특정 부품의 온도 상승이 12.1의 시험 중 산출된 온도 상승을 초과할 경우, 강제 냉각 또는 휴지 시간을 적용한다.

이 시험 중, 과부하 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 중, 불량 발생된 기계 부품은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교체할 수 있다.

18 이상운전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8.12 대체:

2종의 구조(5.10 참조)를 갖는 1종 공구 또는 2종 공구는 극단적 과부하 조건에서 감전 보호 기능의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별도의 시료에 대한 다음의 시험으로 판정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18.1에 명시된 모든 퓨즈, 열적 차단 및 과부하 차단기 등은 단락 되어야 한다.

샘플은 최소 12 kVa 회로에 연결된다. 공구의 전기자/회전자가 구속하거나 슬레노이드에 15분 간, 또는 공구의 회로가 단선되거나 불꽃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하여 전원을 인가한다. 한 가지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구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불꽃이 발생하는 경우 이산화탄소(CO₂)소화기로 소화한다. 충전부와 접근 가능한 부품 간의 누설 전류는 13절에 따라 측정하고, 시험 과정 전체에 걸쳐 시험이 종료된 후 누설 전류가 안정화 되거나 멈출 때까지 모니터 한다. 누설 전류는 2 mA를 초과할 수 없다.

공구를 실온으로 냉각한 후, 다음과 같이 충전부와 접근 가능한 부품 사이에, 15절에 따른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 공구가 15분 후 작동하지 않는 경우, 1 500 V의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 공구가 15분 후 작동하는 경우, 2 500 V의 내전압 시험을 실시한다.

19 기계적 위험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19.101 공구는 트리거가 해제된 위치(즉, “off” 위치로 설정)이고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일 때 작동이 불가하도록 사용자 조작 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a) 트리거와 작업물 접촉장치(workpiece contact) 둘 다 작동하지 않는 한 공구 작동이 불가하도록 작업물 접촉 장치가 있다.

또는

- b) 파스너의 속도가 공구를 벗어나는 시점의 자유 대기 조건에서 15 m/s 이하이고, 질량이 0.3 g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우선 트리거 또는 작업물 접촉장치를 작동해야만 파스너를 연속하여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공구의 모든 가능한 사용 위치에서 검사, 측정 및 실무 시험으로 판정한다.

19.102 공구는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일괄 순차, 전체 순차, 선택적 또는 자동 복귀 작동 요건에 부합하는 작동 시스템으로 제작될 것.
- 작업물 접촉장치의 경우 파스너의 배출 작동 시, 하중 분포에 따른 힘 외에, 공구가 공구 중량의 최소 50 %의 힘으로 작업물에 압착되고, 이 힘이 5 N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공구 질량은 전원 코드 및 파스너 없이 측정할 것.

적합 여부는 작업물 접촉장치의 작동 방향이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수평 표면에 태커를 올려 놓은 상태에서, 측정 및 수동 시험을 통해 판정한다.

19.103 작업물 접촉장치가 필요한 공구의 경우, 특정 정지 위치에서 트리거로 공구를 들어올릴 때 공구가 작동할 수 없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공구에 최소 수량의 파스너를 삽입하고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는다. 총 질량의 25 %에 해당하는 힘을 공구의 맨 상단에 가한다. 이후 이러한 힘을 제거하고 트리거의 중간 지점에서 12 mm 봉을 사용하여 공구를 트리거로 들어올린다. 시험 중 공구가 10도 이상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구는 시험 중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공구 질량의 25 %에 해당하는 힘은 전원 코드나 파스너 없이 공구 질량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19.104 선택적 작동으로 제작된 공구의 경우 일괄 순차 작동, 전체 순차 작동, 종립 또는 off를 택 일하여 공급해야 한다.

적합 여부는 검사로 판정한다.

19.105 작업물의 접촉장치는 정상 사용 조건에서 조기 결함으로 인하여 트리거만 작동해도 공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조기 결함을 충분히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결함 분석 또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작업물 접촉장치는 최대 이동 조건에서 50 000회의 사이클 시험을 실시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른 시험이 완료된 경우, 공구는 임의의 위치에서 트리거만 사용할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 설정 과정에서, 공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작업물 접촉장치의 힘이나 이동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공구를 작동할 필요가 없다.

20 기계적 강도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1 구조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1.18.1 대체:

스위치 또는 작업물 접촉장치를 “on” 위치로 고정하는 장치는 없어야 한다.

22 내부 배선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3 부품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4 전원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5 외부 전선용 단자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6 접지 접속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7 나사 및 접속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8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고체절연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29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30 내부식성

KC 60745-2-16:2022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31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

제1부의 이 항목을 적용한다.

부속서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부속서를 적용한다.

부속서 K
(규정)

배터리 공구 및 배터리 팩

K.1 적용범위

추가:

다음은 제외하고 제2부의 부속서를 적용한다.

K.12.1 수정:

2번째 단락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공구는 파스너가 없는 조건에서, 다음의 작동 시간 중, 먼저 발생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 10사이클
- 온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 배터리 팩 방전으로 공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각 사이클은 매 1초마다 1회 작동하는 비율 또는 공구 설계에 따른 제한 조건에서 1분간 공구를 작동한 후 공구의 전원을 끄고 3분간의 휴지 시간을 갖는다. 온도 상승은 “on” 시간 종료 시 측정한다. 제조업체의 선택에 따라, 공구는 열적으로 안정화 될 때까지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다.

부속서 L (규정)

주전원이나 절연되지 않은 전원이 제공된 배터리 공구와 배터리 팩

L.1 적용범위

추가:

다음은 제외하고 제2부의 이 부속서를 적용한다.

L.12 온도상승(heating)

대체:

이 조항은 공구가 주 전원 또는 비절연 공급원에 직접 연결되는 구성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배터리 팩 또한 충전할 수 있는 공구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시험하고, 파스너가 없는 조건에서, 다음의 작동 시간 중 먼저 발생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 10사이클
- 온도가 안정화 될 때까지
- 배터리 팩 방전으로 공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공구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배터리 팩이 충전될 수 있도록 시험을 반복한다.

각 사이클은 매 1초마다 1회 작동하는 비율 또는 공구 설계에 따른 제한 조건에서 1분간 공구를 작동한 후 공구의 전원을 끄고 3분간의 휴지 시간을 갖는다. 온도 상승은 “on” 시간 종료 시 측정한다. 제조업체의 선택에 따라, 공구는 열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제1부의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준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기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 적용함으로써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요시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4. 향후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중복시험 항목을 없애고 단일화 함으로써 표준과 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인증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KS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인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심 의 : 전기기기 분야 전문위원회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원안작성협력 : 시험 인증기관 담당자 연구포럼

구 분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전우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원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안전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안전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KC 60745-2-16 : 2022-02-16

**Hand-held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 Safety**

**- Part 2-1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ackers**

ICS 31.080.01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http://www.kats.go.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주소 : (우)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TEL : 043-870-5441~9 <http://www.kats.go.kr>

